

산업안전 Q&A

Q

공사금액이 3억미만인 건설현장으로 기술지도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현장입니다. 그러나 기술지도를 받아도 무방한지와 법적인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나.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그러나 기술지도 대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Q

대·소도구실의 환기설비가 별표6의12 국소배기장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스감지기·가스경보공사·가스누설경보수신만이 별표6의13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단독 정압기내의 가스압력자동기록장치·안전밸브·이상압력통보장치가 가스안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절연조인트·절연SPACER·전기부식장치·배관매설못·배관매설포시테이프·가스차단기(자동)가 가스안전시설에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세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와 같은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예컨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분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재해예방시설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국소배기장치, 가스감지기, 가스경보공사 등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관리시설에 해당되어 세금이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관런부처에 질의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계단, 안전발판에 부착된 고리, 크래프 등의 수리로 발생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전계단 및 안전발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즉 표준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등은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질의 내용의 안전계단 및 안전발판은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수리비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당 현장은 바다를 매립한곳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공사내용으로는, 도로신설공사, 우수관로 설치공사, 상수관로 설치공사, 하수관로 설치공사, 구조물공사, 조경공사 등 여러 종류의 공사를 실시 합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당 현장을 택지조성공사로 인식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계상기준인 0.94%의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제가본 견해로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함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요율을 1.88%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계상기준을 어는 것으로 해야 할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4조 제2항에 의해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현행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에 의하며, 동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 공작물 완성을 위한 전체 공사 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신설공사, 우수관로 설치공사, 상수관로 설치공사, 하수관로 설치공사, 구조물공사 등은 일반건설(갑)에 해당하고 조경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조경공사가 전체공사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면 일반건설(갑)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도로신설공사와 구분됨)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등이나 이 경우도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갑)으로 분류됩니다. 

